

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

(의견서 번호 : 24-10)

기관 및 부서명	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	작성 자	직급 : 지방시설6급 성명 : 이지현(031-8008-2081)
건 명	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관련		

1. 사업개요 (추진 일정 등)

□ 개요

- 사업명 : □□리 마을만들기사업
- 위치 : ○○군 △△면 □□리 XXX-X번지(답) / 면적 : 1,XXX㎡
- 용도지역 : 자연보전권역, 개발제한구역, 상수원보호구역
- 시행자 : ○○군수
- 세부사업 : 주민쉼터 조성,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

□ 관련 법령

- 「수도법」 제7조(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)
-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13조(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)
- 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2조(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)

2.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사유

- ○○군은 마을 내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문화·휴식공간 및 야외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·조성하는 '□□리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'을 승인·고시하였으나, 국유지 사용이 어렵다는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으로 변경 승인하고자 함
- 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2조 제7호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태양광 설비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, 도시·군계획시설의 부지, 주택의 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이 건 필지는 위 세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음
- 그러나, 이 건은 ○○군이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여 발전사업을 통해 지역 소득증대 등 낙후된 마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2조 제1호 마목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공작물로 보고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함

3. 검토의견

- 「수도법」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

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,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,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

-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13조 제1항 및 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2조 제1호 바목에 따르면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로서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경우 허가가 가능하고,
 -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태양에너지 설비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(가목), 도시·군계획시설의 부지(나목), 주택의 대지(다목) 중 하나에 설치하는 경우 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
-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에 대하여 법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그 제한을 받는 자는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에 이르는 점이나, 그 행위허가기준에 관련된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나 목적이 어디까지나 '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'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관련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취지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(부산고등 2001. 8. 31. 선고 2001누458)하고 있고,
- 이 건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2조 제1호 바목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고, 보호구역 밖에 설치하여서는 사업 목적 등을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를 의미하므로 ○○군에서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설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함(물이용정책과-1436, 2024. 3. 21.)
- 이와 같이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 등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
 -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인 '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'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범위 내에서 상수원관리규칙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시장·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,
 - 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2조 제7호는 당초 건축물 등의 옥상이나 도시·군계획시설의 부지에 한하여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하였으나, 친환경설비인 태양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2021. 10. 20. 개정 시 주택의 대지를 추가하였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극히 제한된 장소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
- 따라서, 시장·군수가 특정 마을주민들을 위해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태양광에너지 설비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것은 공공목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

■ 본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은 귀 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이며, 위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